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김태민* · 신상민**

요 약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Discussion on Renaming of the Act for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 Amend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Kim Tae Min* · Shin Sang Min**

ABSTRACT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Key words :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urity, Security Business Act, safety of society, public security

접수일(2016년 2월 12일), 수정일(1차: 2016년 2월 22일),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계재확정일(2016년 2월 24일)

** 우석대학교 경호비서학과(교신저자)

★ 본 논문은 (사)한국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PPT)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음.

1. 서 론

대한민국의 보안산업은 ‘경비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호경비업무와 같은 보안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경비업법」으로, 여기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업무들을 ‘경비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1]. 대한민국의 경비업은 이와 같이 5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1976년 12월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보안산업이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안산업의 출발점은 1954년 대한상회 군인회 산하 용진보안공사가 미8군과 경비계약체결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군납경비를 한 것으로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후 범야실업공사(1958년 설립)가 1962년 5월 10일 한국과 미국, 대한석유저장(주)의 3자협정으로 설립된 KOSCO(Korea Storage Company)와 부두에 야적한 석유류의 경비·검수·관리 등의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용역경비계약이다[5][16][22]. 이러한 제도화에 힘입어 보안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2014년말 기준 경비업체 법인수 4,287개, 경비원 150,543명이라는 양적 성장을 일구어 내고 있다[2].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조 9500억원정도이고, 허가 받지 않은 직영 경비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40만명 정도 된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경비업에 편중된 시장의 구조적 결함, 업체의 영세성, 사회적 인식 문제, 비전문화, 법제도적 문제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6][7][9][19]. 따라서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호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보안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그것은 각 국의 국민과 사회안전 확보,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보안산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보안과 관련된 영

역을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에게 없는 민간조사업, 교통 유도경비업, 민간군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법률 제명이 정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업무 영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경비업’이라는 용어보다 ‘민간경비’ 내지 ‘민간경비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과거에 준한, 즉 현실과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국내 보안산업은 초기에 단순 인력경비가 주류를 이루었고, 법령 제정의 태생적인 문제(일본 경비업법의 영향), 도입 초기 연구에서 ‘security’의 번역 상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경비’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있다[10]. 김태민(2010)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범명·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명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보안요원’, ‘경호원’, ‘안전요원’ 등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며[8], 이창무(2010)는 ‘민간경비’를 ‘민영보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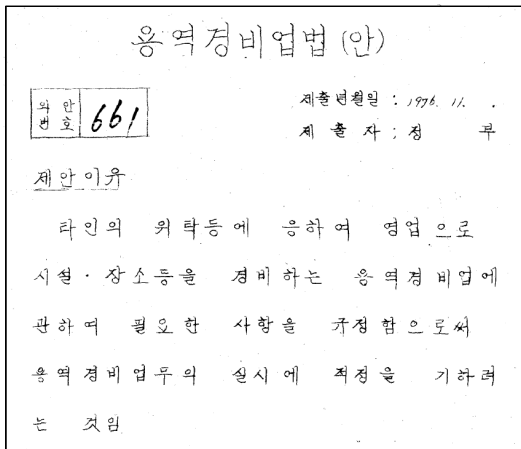
다만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직무 명칭이 ‘경호(구, 신변 보호)’와 ‘보안(구, 경비)’으로 명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내 보안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단순 인력 경비에서 최첨단 시스템보안, 그리고 기타 보안업무의 다양성 등)에 따라 수정·보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18]. 따라서 보안산업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법률 제명의 개정에 대해 경호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법률 제명 「용역경비업법」으로 법률 제2946호로 제정되어 1977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제정이유를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3]. 1976년 11월 용역경비업법안(의안번호 661)의 제안이유는 (그림 1)과 같다[14].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 1999년 3월 제7차 개정 시 「경비업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용역경비업법안 의안원문/제안이유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차 개정(1981.02)의 주요내용은 “용역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것이었고, 3차 개정(1989.12)의 주요내용은 용역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18세미만이거나 59세이상으로 완화하고, 용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계경비 시설을 설치·폐지·변경한 때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4차 개정(1991.05)의 주요내용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

자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임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 개정(1995.12)의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며,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였다. 7차 개정(1999.03)시 경비업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고자 하였다. 8차 개정(2001.04)의 주요내용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이 때부터 대한민국의 경비업무는 5개 업종이 되었다. 9차 개정(2002.12)의 주요내용은 경비업자 겸업금지 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하는 것 등이었고, 11차 개정(2005.08)의 주요내용은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14차 개정(2008.12)의 주요내용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15차 개정(2009.04)의 주요내용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60세로 연장하려는 것이었다.

17차 개정(2013.06)의 주요내용은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던 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20차 개정(2015.07)의 주요내용은 경비협회의 입학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었고, 최근 개정된 23차 개정(2016.01)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입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3].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경비업법 제·개정의 주요 내용[3]

구분	연월	주요 내용
제정	1976.12	용역경비업법 제정
개정1차	1981.02	용역경비원 연령상한 55세로 연장
개정3차	1989.12	기계경비시설 설치 등 때 신고, 공제사업
개정4차	1991.05	지방경찰청장의 감독권 신설
개정5차	1995.12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신변보호업무 추가
개정7차	1999.03	경비업법으로 범명 변경 규제 개선·완화
개정8차	2001.04	특수경비업무 추가 기계경비업무 허가제 변경
개정9차	2002.12	경비업자 검검금지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
개정11차	2005.08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시 형사처벌
개정14차	2008.12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개정15차	2009.04	특수경비원 연령상한 60세
개정17차	2013.06	집단민원현상 규정
개정20차	2015.07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확대 및 통제장치 마련
개정23차	2016.0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개정

2.2 선행연구 : 법률 제명 개정 논의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1999년에는 「경비업법」으로 한 번 법률 제명이 개정된 바 있다. 행정자치위원회(1998.12). 용역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용역경비업법」의 제명을 「경비업법」으로 개정하고, 경비지도사 자격, 용역경비협회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개정안은 제명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용역은 사전적 의미로 물체

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일반에 인식되어 있어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4].

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였던 박병식교수(2011)는 “용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 일본도 용역경비업법이라고 하지 않고 경비업법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청이 입안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15]. 홍용연(2006)도 용역이라는 단어가 용역강패를 연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현행 「경비업법」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5].

본 연구 관련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논문에 이러한 용어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법률 제명 개정 논의가 있었던 주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태민(2010)은 범명을 「경호경비 등 안전에 관한 법률」, 「경호경비업법」, 「보안 및 안전사업법」, 「민영보안업법」 등으로 하고,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보안요원’, ‘경호원’, ‘안전요원’ 등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하였다[8]. 이창무(2010)는 ‘민간경비’를 ‘민영보안’으로 수정하자고 하였으며[20], 김태민과 신상민(2012)의 연구에서는 범명을 「(민영)보안산업법」, 「경호보안산업법」, 「경호경비업법」 등으로 ‘경비원’이라는 용어는 ‘민영보안관’(또는 업종명+보안관), ‘민영경호관’ 등으로, ‘경비지도사’는 보안안전지도사(예: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정됨)로 수정을 제안하였다[12]. 최근 김태민과 신상민(2015)은 학술발표에서 범명을 「보안산업법」,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11].

한편 윤제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발의연월일 : 2012.11.2.) 법안에서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조사업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고, 이에 법률의 제명은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17].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의 개정에 대해 전문가인 경호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비업법」의 새로운 법률 제명을 제안하고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경호학자로 하였다. 경호학자는 경호학과 교수(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를 포함)와 대학원 과정이상에서 경호학(경호안전학, 경호보안학을 포함)을 연구하고 있는 석·박사(과정)이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면담 및 의견조사지를 회수하였다.

보안산업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였고, 전문가 의견 조사는 경호전문가를 사전면담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의견조사지를 작성하였다.

「경비업법」의 새로운 법률 제명 예는 선행연구와 학술대회에서 제시되었던 법률 제명을 사전조사한 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법률 제명안은 다음과 같다.

- ① 1안.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 ② 2안. 「민영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 ③ 3안.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 ④ 4안. 「경호경비업법」
- ⑤ 5안. 「경호보안산업법」
- ⑥ 6안. 기타(안)

작성된 의견조사지는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회수하였고, 전화면담과 직접 면담도 병행하였다. 직접면담은 반구조화 된 조사지로 피면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 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경호학과 교수와 경호학 석·박사(과정)이상 경호학자는 총 85명이었다.

총 85명의 경호학자 구성은 교수 54명, 경호학 석·박사(과정) 31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54명 중 4년제 대학교 교수는 32명, 전문대학 교수는 22명이었다. 경호학 석·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은 15명, 석사(과정)은 1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

구 분		인원(명)	
교 수	4년제 대학교 교수	32 (37.65%)	54 (63.53%)
	전문대학 교수	22 (25.88%)	
경호학 석·박사(과정)	경호학 박사(과정)	15 (17.65%)	31 (36.47%)
	경호학 석사(과정)	16 (18.82%)	
계		85(100%)	

주: 교수는 전임교수, 비전임교수를 포함
교수의 학위는 구분하지 않음.
경호학 석·박사(과정)은 교수가 아닌 인원

4.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이라는 현행 법률 제명에 대한 개정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4.1 경호학과 교수 의견

법률 제명 개정의견에서 경호학과 교수들은 <표 3>과 같이 첫 번째안으로는 「경호보안산업법」(31.48%)을 희망하고 있었고, 두 번째안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9.63%)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교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 간에는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4년제 대학교 교수는 「경호보안산업법」(40.63%),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5.00%)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 교수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36.36%),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31.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경호학과 교수 의견

구 분	4년제 대학교 교수	전문대학 교수	계(명,%)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6 (18.75%)	7 (31.82%)	13 (24.07%)
민영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1 (3.13%)	-	1 (1.85%)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8 (25.00%)	8 (36.36%)	16 (29.63%)
경호경비업법	3 (9.38%)	3 (13.64%)	6 (11.11%)
경호보안산업법	13 (40.63%)	4 (18.18%)	17 (31.48%)
기 타	1 (3.13%)	-	1 (1.85%)
계(명)	32	22	54 (100%)

4.2 경호학 석·박사(과정) 의견

법률 제명 개정의견에서 경호학 석·박사(과정) 들은 <표 4>와 같이 첫 번째안으로는 「경호보안산업법」(29.03%)을 희망하고 있었고, 두 번째안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5.81%)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경호학 박사(과정)과 경호학 석사(과정) 간에는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경호학 박사(과정)은 「경호보안산업법」(46.67%),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33.33%) 순으로 나타났고, 경호학 석사(과정)은 「경호경비업법」(37.50%),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3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호학 석·박사(과정) 의견

구 분	경호학 박사(과정)	경호학 석사(과정)	계(명,%)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2 (13.33%)	5 (31.25%)	7 (22.58%)
민영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1 (6.67%)	-	1 (3.23%)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5 (33.33%)	3 (18.75%)	8 (25.81%)
경호경비업법	-	6 (37.50%)	6 (19.35%)
경호보안산업법	7 (46.67%)	2 (12.50%)	9 (29.03%)
기 타	-	-	0 (0.00%)
계(명)	15	16	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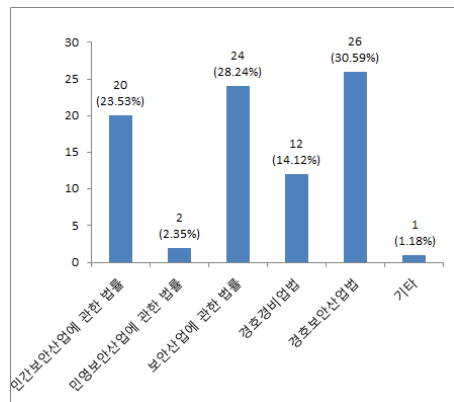
4.3 종합

법률 제명 개정의견에서 경호학자들(경호학과 교수와 경호학 석·박사(과정))의 의견을 종합하면 <표 5> 및 (그림 2)와 같이 첫 번째안으로는 「경호보안산업법」(30.59%)으로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었고, 두 번째안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8.24%) 순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경호보안산업법」으로 법률 제명을 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26명인 30.59%(경호학과 교수 31.48%, 경호학 석·박사 29.03%)가 응답하였다.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24명인 28.24%(경호학과 교수 29.63%, 경호학 석·박사 25.81%)가 응답하였다.

<표 5> 법률 제명 개정(안) 의견 종합

구 분	경호학과 교수	경호학 석·박사(과정)	계(명,%)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13 (24.07%)	7 (22.58%)	20 (23.53%)
민영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1 (1.85%)	1 (3.23%)	2 (2.35%)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16 (29.63%)	8 (25.81%)	24 (28.24%)
경호경비업법	6 (11.11%)	6 (19.35%)	12 (14.12%)
경호보안산업법	17 (31.48%)	9 (29.03%)	26 (30.59%)
기 타	1 (1.85%)	-	1 (1.18%)
계(명)	54	31	85 (100%)



(그림 2) 법률 제명 개정(안) 의견 종합(단위: 명)

4.4 논의

법률 제명의 개정을 위해서 우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보안’, ‘경호’, ‘경비’, ‘산업’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표 7>과 같이 하고 있다.

<표 7> 용어의 정의[4]

용어	정의
용역 (用役)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경호 (警護)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
경비 (警備)	「1」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2」=경비원.
보안 (保安)	「1」 안전을 유지함. 「2」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
민간 (民間)	「1」 일반 백성들 사이. 「2」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
민영 (民營)	민간인이 하는 경영.
업 (業)	「1」=직업. 「2」부여된 과업.
-업 (-業)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업’ 또는 ‘산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산업 (産業)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농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 등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에서 ‘용역(用役)’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된다[4]. 그러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보안산업의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이미 법률 제명이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법률 제명에 ‘용역’이라는 용

어는 사용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와 학계의 논의에서 ‘민간’과 ‘민영’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민간(民間)’은 “① 일반 백성들 사이 ②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민영(民營)’은 “민간인이 하는 경영”함을 의미한다[4]. 박병식(2011)은 ‘민간경비’의 유래에 대해 박병식교수가 고민하여 작명한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사경비(私警備)’라고 불렀는데 이 ‘사경비’라는 용어에서 ‘사’는 사기의 ‘사(詐)’를 의미하므로 품격이 떨어진 느낌이어서, 고민 끝에 사경비보다 민간경비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의 명칭을 ‘민간경비론’이라고 정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도 모두 민간경비론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15]. ‘경호(警護)’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으로 정의되며[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3]. ‘경비(警備)’는 “①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②=경비원”으로 정의되며, 보안(保安)은 “① 안전을 유지함 ②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 정의된다.

‘업(業)’은 “①=직업 ② 부여된 과업”으로 정의되고, 명사 뒤에 붙는 ‘-업(-業)’은 “‘사업’ 또는 ‘산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산업(産業)’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농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4]. 통계청(2008)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21]. 한국표준산업

분류 상 경호·경비·보안에 관련된 산업은 대분류상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다. 중분류 상으로는 '75. 사업지원 서비스업(Business Support Services :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6> 경호·경비·보안의 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코드					산업 분류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	75	7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3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본 연구에 사용된 '전문가 의견 조사지'에 법률 제명 개정안을 먼저,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을 1안으로 정한 것은 윤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에서는 법률의 제명을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이유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사업이 형성·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밝히면서 경

비업 이외에 민간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존의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바 제명도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17].

법률 제명 개정안을 2안, 「민영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민간'과 '민영'이라는 용어의 어감과 내포된 의미 때문이었다.

이창무(2010)는 민간경비의 '민간'이란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님을 제기하면서, 'private security'에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민영'이라는 용어는 우선 사전적으로 민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수익 창출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았다[20].

법률 제명 개정안을 3안,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민간' 또는 '민영'이라는 단어사용의 논란을 배제하여 법률 제명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법률 제명에 '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성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법률 제명 개정안을 4안, 「경호경비업법」으로 정한 것은 현행 「경비업법」 상 '경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변보호업무'를 격상 내지 분리의 의미를 담자는 견해였다. 현재 '경호(대다수 국민들은 경비업체라 하지 않고 경호업체라고 사용하며, 이것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이다.)'가 단순 신변보호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서 법률 제명을 개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률 제명 개정안을 5안, 「경호보안산업법」으로 정한 것은 현행 「경비업법」 상 '경호'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경비'라는 용어는 현실적인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한 보안산업을 포괄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정하게 되었다. 더불어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개발 및 시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도 직무명칭은 '신변보호'를 '경호'로, '경비'는 '보안'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각종 위협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보좌하는 일"로 정의되며, '보안'은 "특정한 고객의 재산·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위협을 예방 및 대응을 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

경호학자들은 이러한 용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현대 사회에서의 보안에 관한 인식, 선행연구와 학술토론 등을 통해 내린 개인적 판단, 학문의 입장, 또한 경호·경비·보안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여 법률 제명안에 응답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호보안산업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점은 앞서 제기하였던 ‘경호’와 ‘보안’의 의미를 새로운 법률 제명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경비업법」은 1976년 법률 제명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경비업법」으로 한차례 법률 제명이 개정 되는 등 현재까지 23차례 걸쳐 개정되어 오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대한민국의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 제명이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는 경호학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법률 제명 개정안에 대해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행 「경비업법」은 법률 제명을 개정함이 마땅하다. 법률의 제명 개정은 대한민국 보안산업의 이미지 향상,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을 「경호보안산업법」 내지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제명 개정 후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이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비원’은 ‘보안원’, 신변보호업무 종사자는 ‘경호원’, ‘경비지도사’는 ‘보안지도사’ 등이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향후 법률 개정 시 경호학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제의 개선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1]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 [2]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5] 김정환,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2009.
- [6] 김태민, “경호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pp. 137-164, 2011.
- [7] 김태민, “대한민국 신변보호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찰연구학회·한국민간경비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 213-233, 2014.
- [8] 김태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 259-284, 2010.
- [9] 김태민, 김동제,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제16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pp. 85-111, 2006.
- [10] 김태민, 김용현, ‘경비업법과 경호관계법’, 진영사, 2009.
- [11] 김태민, 신상민, “경호학의 미래발전 전략”, 한국시큐리티연구원·ASIS한국서울협회·한국안전기술교육협회의 공동 포럼 발표집, 2015.
- [12] 김태민, 신상민, “민간경비산업 관련 실효적 법개정 사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 3-18, 2012.
- [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 [14] 대한민국 정부, 용역경비업법안(의안번호 661), 1976.11.
- [15] 박병식, “한국 경비업법의 현안과 발전방향 - 경비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2011년도 최고경영자 세미나 및 제18차 APSA 한국총회 발표논문집, pp. 194-212, 2011.
- [16] 에스원, ‘에스원이십년사’, 에스원, 2001.
- [17] 윤재욱 등,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 2012.11.2.
- [18]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 [19] 이상철, 김태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3권 제5호, pp. 53-67, 2002.
- [20] 이창무, “‘민간경비’ 용어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pp. 203-226, 2010.
- [2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 통계청, 2008.
- [22]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협회 20년사’, 한국경비협회, 1998.
- [23] 한원덕, “선진국형 융합보안 모델 만들겠다”, 머니위크, 제233호, 2012.
- [24] 행정자치위원회, ‘용역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12.
- [25] 홍용연, ‘경비업법’, 조이에듀넷, 2007.

[저 자 소 개]



김 태 민 (Tae-min Kim)

1999년 2월 용인대학교 학사
2003년 2월 용인대학교 석사
2006년 2월 용인대학교 박사

email : tmkim@kyungnam.ac.kr



신 상 민 (Sang-min Shin)

1992년 2월 용인대학교 학사
1998년 2월 용인대학교 석사
2005년 2월 용인대학교 박사

email : samson9@daum.net